

서울여자대학교 CCTV 설치·운영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여자대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난사고 및 화재예방과 불특정 다수의 출입에 따라 상시관리가 불가능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의 CCTV설치·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(적용범위) ① 이 규정은 서울여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에 적용한다.

② CCTV로 수집·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 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CCTV” 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·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(Closed Circuit Television)을 말한다.
2. “화상정보” 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3. “정보주체” 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,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.
4. “처리” 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·저장·편집·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.

제4조 (담당부서 및 업무) ① 본교 CCTV시설 담당부서는 시설관재팀으로 하며, 책임관은 시설관재팀장이 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본교의 CCTV 설치·운영, 화상정보의 수집·처리,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
제5조 (설치·운영) ① 본교 CCTV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카메라 대수·위치·성능 및 촬영범위는 별도로 정하며, 자체실정에 따라 카메라 대수, 위치 및 촬영범위를 증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

② 본교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한다.

③ DVR의 작동키는 관리책임자가 관리한다.

④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최소 10일간으로 한다.

제6조 (관리) ① CCTV의 주장치는 각 건물의 경비실에 설치하고, 다음 각 호의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·재생할 수 없으며, 열람·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[별표 1]의 입출력자로 관리대장에 의해 책임관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·재생할 수 있다.

1. 책임관
2. 관리책임자
3. 보안 및 방화관리담당자
4. 책임관의 허락을 받은 자

② CCTV에 의하여 수집·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제1항의 각호에 지정된 최소한의 인

원으로 제한한다.

③ 책임관은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.

④ 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·누출·훼손 등에 대비 하여 기술적·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.

⑤ 책임관은 화상정보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에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시 및 정기교육을 실시한다.

⑥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CCTV의 관리 및 설치에 관한 시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장비 및 기술을 갖추는 것
2. 수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추는 것

제7조 (안내판 부착) 본교 출입자에게 CCTV 설치 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안내판을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.

CCTV 녹화중

서울여자대학교는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의 목적을 위하여 건물 출입구 및 내·외부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녹화 운용중입니다.

책 임 관 : 시설관재팀장 (02) 970-5161

(가로 : 60cm, 세로 : 40cm)

제8조 (화상정보의 보호원칙) ①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.

② 수집된 화상정보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,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

제9조 (화상정보의 제한)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·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
2. 정보주체에게 열람·제공되는 경우
3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4. 신문·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5.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- 6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- 7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제10조 (열람 등의 요청) ① 정보주체는 책임관에게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·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지정하는자 입회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(정보통신망 포함) 하여야 한다.

- 1.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2.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
- 3.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- 4.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제11조 (화상정보의 제공) ① 화상정보의 학술정보운영팀 재생요청은 요청자의 소속, 인적사항, 열람목적 및 열람하고자 하는 일시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한다.

② 화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·제공한 경우에는 입·출력자료관리대장 [별표1]에 기록 관리한다.

제12조 (보유 및 삭제) 수집된 화상정보 보유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보유기간 만료즉시 삭제하도록 한다. (보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)

제13조 (비밀유지의무)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4조 (준용규정) 이 규정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 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·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

제15조,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제정 <2009 제8차 교무위원회>)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(제4조, 제11조 개정<2009 제26차 교무위원회>)

